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사회공공성강화·사회대개혁 실현

민주노총 교육지

▶ 민주노총 교육선전실 | www.nodong.org | ☎ 02-2670-9120 | 2025년 8월 29일

■ '계속 일하고 싶어요'

최근 나주 벽돌공장에서 한 이주노동자를 벽돌더미에 매달아 우리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건이 있었다. 한파 속 비닐하우스에서 동사한 노동자, 단속을 피하다가 사고 사망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 임금을 종이쿠폰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우리가 성숙한 사회로 이해하는 관념을 여지없이 부숴버린다.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앞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구조와 편견, 차별의 실태를 확인하자.



■ 여기 사람이 왔다.

1991년 정부는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를 도입했고, 이후 1993년에는 '산업연수생제도'까지 만들어 우리 산업에 이주노동자를 대거 투입했다. '연수생'이란 미명 하에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았고, 임금도 잘 지급되지 않았다. 도망갈 수 있다는 이유로 여권과 통장을 압류했다. 폭행과 폭언은 아주 당연지사,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보상은커녕 쫓아내기에 바빴다.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불린 이유다. 결국 노예와 같은 삶이 아니면 '불법체류자'라며 범죄자로 내모는 이주노동 구조에 이주노동자들은 저항했다. 94년 11명의 산재피해 이주노동자는 농성 끝에 노동부로부터 미등록 노동자에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산재보상 3년 소급분을 적용한다는 정책을 쟁취했고, 95년 13명의 네팔 산업연수생이 서울 명동성당 입구에서 몸에 쇠사슬을 감고 농성을 벌였다. 이에 정부는 산업연수생에게 산재보험, 의료보험 적용, 최저임금제 적용 및 폭행 금지 등 근로

기준법 8개 조항의 적용을 발표했다.

이주노동자의 투쟁으로 실패한 산업연수생제도는 폐지되고 정부는 새로운 제도, '고용허가제법'(2004년 8월 시행)을 신설하게 됐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자 정부는 30만에 달하는 미등록 노동자를 줄이고자 대대적인 단속추방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절망한 10여명의 미등록 노동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 강제 단속추방 중단과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를 요구하며 농성 투쟁이 전개됐고, 381일의 농성의 성과를 통해 2005년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MTU, 이하 이주노조)'이 설립됐다. 이후 이주노조는 10년간의 소송 끝에 2015년 설립 필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다. 고용허가제를 비롯해 이주노동자를 요구하는 산업현장에 따라 다양한 비자도 생겨났다. 2024년 정부 조사에 외국인 중 임금 근로자는 95만 6천명, 미등록 이주민 약 38만 명을 더하면 130만명 이상이 이주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은 전체 인구 대비 5.17%로 OECD 기준에 의하면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

■ 불법이 된 사람

사업장 변경 제한

산업연수생 제도 이후 도입된 고용허가제(E-9비자)도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E-2 회화강사, E-6 예술흥행 비자, E-7 (준)전문인력/기능인력, E-8 계절근로, E-10 선원취업 등 우리의 산업 전반에 필요한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다양한 비자가 도입됐다. 하지만 이주노동 제도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통제를 기반으로 노동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이 바로 ‘사업장 변경 제한’이다. 앞서 언급한 취업비자의 종류는 다양하다. 하지만 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E-9비자)부터 법무부까지 거의 모든 취업비자에서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어 있다. 근로조건, 임금, 숙소, 처우가 열악하고 비인간적이라도 이주노동자가 허가 없이 사업장을 그만두게 되면 비자를 잃게 되어 추방 대상이 된다. 결국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을 견디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명백히 ‘추방 대상’이라는 제재의 위협과 그로 인한 비자발적 노동으로 ‘강제노동’에 해

당한다.

ILO는 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을 통해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4년전 ILO 협약 29호를 비준했으며, 강제 노동을 금지할 국제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럼에도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사업장 운영’을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를 강제노동에 내몰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시절, 2023년 9월부터 시작된 ‘지역 제한’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뿐만 아니라 ‘거주 및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는 악법이다.

민간 인력업체, 브로커의 착취

이주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는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 발생한다. 고용허가제(E-9)는 국가 간 협약을 통해 송출국에 산업인력공단 지사를 설치 이주노동자의 송출을 담당한다. 그러나 법무부, 해수부 등이 담당하는 그 외 취업비자는 민간업체가 송출을 담당하면서 이주노동자에게 막대한 송출 수수료와 이탈 보증금 등을 부과해 착취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조선업 이주노동자들은 인력업체에 800~1,200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



경기 여주에 있는 한 농장의 기숙사. 사업주가 제공한 비닐하우스 안 조립식 패널 가설건축물 숙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생활하고 있다.

불해야 했고, 입국 후에는 낮은 임금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도록 강요받았다. 계절근로자의 경우, 한국과 해외 지자체 간의 협약으로 노동자를 모집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브로커가 모집을 맡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수수료는 물론이고 연대보증을 세우고, 국내 입국 후에는 여권을 압류, 임금에서 매달 수십만 원을 착취했다. 선원 취업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하루 평균 18시간의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신분증과 통장 압류, 이탈 보증금 등 강제 노동 및 인신매매의 수단이 동원되기도 한다.

차별과 폭력, 학대, 괴롭힘

이주노동자의 구조적 차별과 억압은 사업주로 하여

금 차별과 폭력, 학대, 괴롭힘에 손쉽게 접근하게 만든다. 앞서 본 바대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고 싶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든’ 참는 것이 가장 가능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가 노동조건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좋은 사장님’을 만나는 ‘행운’에 기대는 것 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여러 사례들을 통해 드러난다.

최근 나주 벽돌공장 사건 외에도 폭염 속에 베트남 출신 건설노동자가 앓은 채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사례로는 도금 공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는 산업질환을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불법체류자로 만들겠다’는 협박과 업무방해 신고 등을 동원한 괴롭힘과 폭력이었다. 돼지농장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의 욕설과 폭행, ‘조회’라는 이름의 별주기와 언어폭력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



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열악한 숙소 등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발생률은 내국인 대비 2~3배에 해당하며, 2019년 1,216억 원을 기점으로 매년 1,000억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고의적 임금체불 외에도 노동시간을 축소, 또는 기록하지 않거나 숙식비를 과하게 공제하는 수법이다.

산업재해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이주노동자는 정규노동자 대비 산재사망 발생률이 3배에 달한다. 매해 8,000여 명이 재해를 당하고 100여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한 숙소도 문제다. 전체 절반 이상, 농업

은 약 70%가 비주거용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비닐하우스, 사업장 내 부속시설 등)을 숙소로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은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로 고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이주노동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이주노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체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주노총 제도개선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고용허가제의 폐지이다.

‘사업장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는 ‘강제노동’을 발생시킨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자유를 보장하고, 구직기간 제한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조항도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주의 재고용 신청이 없어도 5년 이상 취업 기간을 허용하고, 가족 동반을 허용하는 노동허가제로 바뀌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도 개선해야 한다. 매년 1,000억이 넘어가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주 처벌 강화, 노동시간 기록 의무화, 농업업 비법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간이대지급금제도 적용, 체불임금 구제 법적절차 진행 중 체류자격 부여, 출국만기보험(퇴직금보험) 국내 지급 등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임시가건물을 숙소로 활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기숙사 제공을 사업주의무로 두어야 한다. 또한 기숙사 환경에 대한 기준을 정비해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

이 밖에도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추방 중단과 체류권 부여 정책을 실시해 반인권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임금체불 진정과 같은 노동사건에 대해서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공무원의 통보의무¹⁾를 면제해야 한다. 삭감됐던 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지원센터의 예산 회복, 상담, 교육, 문화활동 등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영주 기획 확대와 자격요건 완화, 인종차별 철폐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야 한다.

1)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등록 이주민을 발견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할 의무를 지닌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 규정되어 있음.



■ 불법사림은 없다

이주노동 제도의 차별과 편견의 구조는 이주민에 대한 일상적 차별과 편견을 부추긴다. 자본은 이를 이용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거없는 혐오를 양산하면서 노동자 간의 이간질을 시도한다. ‘불법체류자는 범죄를 많이 일으킨다’, ‘일 자리를 뺏는다’는 혐오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미등록체류자의 범죄 발생률은 등록체류자에 비해 오히려 낮고, 외국인 전체 범죄율은 내국인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범죄 가능성이 높은 청장년 연령층 비율이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훨씬 많은 것을 감안해 비슷한 나이대를 비교하더라도 외국인 범죄율이 훨씬 낮다고 한다. 일자리에 관한 편견도 마찬가지이다. 이주노동자는 노동력 공백 상태의 산업에 투입된다. 이주노동자는 재벌 중심의 수직적 하청 체계,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값싸고 착취하기 용이한 노동력이 되어 왔다. 문제는 일 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위기와 공포를 조장해 근로조건을 하향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자본에 있다. 이러한 갈등은 차별과 편견을 부추겨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있다.

오히려 이주노동자(이주민)은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016년 이주민의 경제적 효과는 생산 효과(54조6천억원)와 소비지출 효과(19조5천억원)를

합쳐 총 74조1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0년에는 경제적 효과가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분석하는 등 이주민의 경제적 기여는 날로 커지고 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간접세, 주민세, 지방세 등 납부하는 세금까지 포함하면 경제기여도는 더욱 늘어난다.

그럼에도 이주노동자를 ‘이방인’이란 의미를 내포하는 ‘외국인’으로 바라본다. 이는 다르게 대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관념을 유지시킨다. 그래서 UN이나 국제기구에서는 보다 중립적인 ‘이주’(migrant)란 용어로 ‘이주노동자’, ‘이주민’, ‘이민자’로 부를 것을 권고한다.

특히 ‘불법체류자’ 같은 표현이 가장 문제이다. 앞서 보았듯이 불합리한 구조가 사람들을 ‘불법’으로 내몰았으며, 체류를 초과했을 뿐 개인의 재산과 생명, 국가에 손해를 입히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범죄자를 연상시키는 ‘불법체류’라는 용어는 법적, 제도적인 보호에서 제외시켜 인권 침해에 취약한 집단으로 만들고,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가져온다. UN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은 “미등록은 행정법규 위반이지 형사상 범죄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불법체류자가 아닌 ‘미등록 이주민’,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표현해야 한다.

■ 노동자로 단결하자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를 ‘사람’이 아닌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해 왔다.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이방인’이라는 명목으로 차별과 착취를 정당해 왔다. 기본적인 노동권의 보장도, 거주 및 이전의 자유도 없는 거의 40년의 세월을 우리 안의 보이지 않는 이웃으로 살아왔다.

이제 ‘불법체류자’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노동자를 발견하자. 70년 전태일이 발견한 것과 같은 불합리한 제도에 의해 내몰린 노동자, 자본에 의해 덧씌워진 경쟁과 배제로 얼룩진 노동자, 쓰다 버린 부

속품처럼 버려진 노동자를 발견하자. ‘불법’, ‘이방인’, ‘외국인’이란 말 뒤에 감춰진 노동자,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노동자와 만나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게차 학대 사건 이후 정부는 ‘이주노동 제도의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르면, ‘수급관리 및 지원방안 마련’, ‘부당한 대우, 위험한 근무환경 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사업장 변경 조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여전히 이주노동자를 어렵게 하는 차별적 구조는 존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책이 될 수 없다.

‘불법 사람은 없다.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당연한 권리, 차별적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연대는 시혜가 아니다. 함께 자본의 착취에 저항하는 모든 노동자의 투쟁이다. 자본이 깔아놓은 판을 깨부수는 해방이 된다. 모든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이곳에서 그 무엇도 아닌 ‘노동자’의 이름으로 단결하자!



강제노동철폐!
차별과 폭력 근절!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2025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

2025. 9. 21.(일) 14: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광화문정부청사

